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44 발의연월일: 2025. 4. 18.

발 의 자:신정훈・박지원・김 현

허성무 · 채현일 · 박용갑

복기왕 · 김영환 · 양문석

박해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·시·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하나의 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수원시·고양시·용인시·안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의 증가 및 감소로 하나의 구·시·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·시·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,이 경우 하나의 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법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게 됨.

이에 하나의 구·시·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·시·군의 일부와 결

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61조 및 제61조의2).

법률 제 호

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제1호 중 "區·市·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"를 "구·시·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·시·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·시·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"로, 같은 호 중 "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. 이하 이 條에서 같다)마다"를 "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)마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區·市·郡이"를 "구·시·군이"로, 같은 호 중 "國會議員地域區로"를 "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·시·군이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"로, 같은 호 중 "된 경우에는 選擧事務所를 두지"를 "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"로, 같은 호 중 "國會議員地域區마다"로 청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"로, 같은 호 중 "國會議員地域區마다"로 향하는 선거사무소를 두지"로, 같은 호 중 "國會議員地域區마다"로 향하는 선거사무소를 두지"로, 같은 호 중 "國會議員地域區마다"로 향하는 선거사무소를 두지"로, 같은 호 중 "國會議員地域區마다"로 향다.

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"를 "2 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·시·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·시·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"로, "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)"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이 第61條(選擧運動機構의 設置) ① 第61條(選擧運動機構의 設置) ①-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 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各號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락소 를,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를, 정당은 중앙당 및 시·도당 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 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. 1. 大統領選擧 政黨 또는 候補者가 設置하 되, 選擧事務所 1個所와 市・ 道 및 區・市・郡(하나의 區 ·市·郡이 2 이상의 國會議 ・시・군이 2개 이상의 국회 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 議員地域區를 말한다. 이하 이 구·시·군의 일부가 인접한 條에서 같다)마다 選擧連絡所 구・시・군의 일부와 결합하 1個所 여 국회의원지역구로 --- 국 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)마다 2. ~ 5. (현행과 같음) 2. ~ 5. (생략) 6. 自治區・市・郡의 長 選舉 候補者가 設置하되, 당해 自

治區・市・郡안에 選擧事務所

1個所. 다만, 自治區가 아닌區가 設置된 市에 있어서는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區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를둘수 있으며, 하나의區·市·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된경우에는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國會議員地域區마다選擧連絡所 1個所를 둘수 있다.

### ② ~ ⑦ (생 략)

제61조의2(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)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(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·시·군(하나의 구·시·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)마다 1개소의정당선거사무소를설치할수있

<u>구·시</u>
<u>·군이</u> 국회의원지
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
•군이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
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
선거사무소를 두지 국회
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
<u>개를</u>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61조의2(정당선거사무소의 설
え) ①
2개 이상
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
나의 구・시・군의 일부가 인접
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

 다.
 여 국회의원지역구--- 국회의 원지역구를 말한다)---.

 1. ~ 3. (생 략)
 1. ~ 3. (현행과 같음)

 ② ~ ⑦ (생 략)
 ② ~ ⑦ (현행과 같음)